



중기청·조달청, 단체수의 계약 지정제외 물품(12개)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

■ 중소기업청(청장 金成珍)과 조달청(청장 崔庚洙)은 '07.1.1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전면 폐지에 앞서 금년 4월1일부로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에서 지정제외되는 11개조합의 12개 물품을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지정하고

○ 영세소기업의 수주기회 제공 및 적정가격 보장 등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공동으로 마련,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

※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이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물품을 관장하는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, 조합이 해당 물품생산 조합원사에게 배정하여, 배정받은 조합원사가 납품하는 제도

'03년 기준 구매실적 4.9조원, 참여업체 1.3만개(81개조합의 138개 물품)

○ 오는 4월1일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 대상물품에서 11개 조합의 12개 물품이 지정제외 되는 것은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것으로

- '05년도 대상물품에서 지정제외조치 대상으로 지적되었으나,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전환에 대한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지정제외 조치를 3개월동안 유예한 바 있음

* 감사결과 지정제외 조치 대상 : 31개조합 43개물품

(대상업체 3,492개(26.9%), 납품실적 11,762억원(24.1%))

3개월 유예 : 11개조합, 12개물품, 1년간 유예 : 20개조합, 31개물품

○ 한편, 감사원은 '04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획기적인 개선 방안(중소기업간경쟁물품제도 및 기술우수제품구매 활성화)을 제시한 바 있음



■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

〈 보완대책의 기본방향 〉

- 보완대책은 경쟁체제 전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되,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정책방향과 배치되지 않는 적정수준에서 추진
-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,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·개선하여 '06년 이후 중소기업간경쟁제도에 반영

1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전환이후 다수기업에게 경쟁입찰 참여 및 수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시 분담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

○특히, 영세 소기업(소상공인)과 지방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들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추가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였음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동수급체간 분담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· 분담비율 20% 이상인 업체 수 : 2개, 0.5점 / 3개이상 1.0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기업·소상공인 및 지역업체 참여시 추가가점 부여 · 소기업(소상공인) 분담비율 5~10% 미만 : 0.25점, 10% 이상 : 0.5점
<p>소기업 적용물품 (5개)</p>	<p>판재, 송강기, 점토벽돌, 전산업무개발및자료처리업무,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</p>
<p>소상공인 적용물품 (7개)</p>	<p>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, 송풍기, 배전반, 재생프라스틱, 분사장비및약제, 방송장치, CCTV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업체 분담비율 5~10% 미만 : 0.25점, 10% 이상 : 0.5점 	

〈참고〉 조달청의 적격심사 기준

(추정가격 2.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제조입찰의 경우)

- 납품 이행능력평가 30점 : 기업의 경영상태(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)
- 가격평가 70점 : 예정가 대비 응찰가격에 대한 점수
- 신인도평가가 가점점 +6 ~ -5점 :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, 품질보증, 환경관리, 여성기업, 모범성실 납세자 등에 가점, 납품지연, 품질하자, 담합 등에 감점

2 또한, 적격심사시 낙찰을 하한선을 상향조정(2.1억원 이상 계약시)하여 경쟁입찰로 인한 지나친 가격하락을 방지하기로 하였음

○낙찰을 하한선을 예정가격의 평균 80% → 85% 수준으로 조정하여 적정이윤 보장

* 2.1억원 미만은 제도개편 취지를 감안, 경쟁시스템 적용하기 위하여 최저가낙찰제 적용

3 한편,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활용율을 높이고 공사용 자재생산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하여 공사용자재는 발주기관에서 적극 분리구매토록 할 계획임

* 12개 물품 중 공사용자재는 8개물품



- 4 또한, 각급 공공기관이 일정 금액(5,000만원) 이상의 조달수요 발생시 조달청에 구매의뢰토록 하여
 ○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에 대한 가점 및 가격안정대책과 공사용자재의 분리(직접)구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
- 한편,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완화대책은 적극 시행하되,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의 혁신은 차질없이 추진하여,
 - 기업의 경쟁력 향상 노력과는 무관하게 다수 중소기업에 배분위주로 운영되던 기존 공공구매제도를 신기술 우수제품 우선 구매 등 기술력 우수기업 중심으로 재편,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음
- * ('03) 공공기관 구매액 74조원, 중기제품 구매액 47조원(63.5%)

<참 고 1>

지정제외('05.4.1) 물품 현황('03년말 현재)

연 번	소관조합	물품명	납품실적(백만원)	비중	참여업체수(개)	비중
전 체	81개조합	138개물품	4,890,000	100	13,002	100
계	11개조합	12개물품	545,163	11.1	1,428	11.0
1	소방기구(조)	분사장비및약제	7,911	0.2	34	0.3
2	감시기기(조)	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	69,884	1.4	181	1.4
3	전 재(조)	방송장치	90,642	1.9	191	1.5
4	전 기(조)	배전반	177,658	3.6	366	2.8
5	전 산 업(조)	전산업무개발 및 자료처리업무	25,454	0.5	203	1.6
6	지리정보(조)	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	35,651	0.7	166	1.3
7	승 강 기(조)승강기	27,305	0.6	54	0.4	
8	목 재(조)	판재	16,945	0.3	29	0.2
9	재생프라스틱(조)	재생프라스틱제품	11,651	0.2	29	0.2
10	점토벽돌(조)	점토벽돌	7,773	0.2	24	0.2
11	기 계(연)	하수처리장치	65,804	1.3	126	1.0
		송풍기	8,485	0.2	25	0.2



<참 고 2> 단체수의계약 폐지후 보완되는 신규제도(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근거)

- '05.7.1 부 시행(3)
 - 성능인증 제도 :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공인기관으로 하여금 인증
 - 성능보험 제도
 - 성능인증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로 인한 구매기관의 손해를 보장
 - 공공구매 담당자 면책조항 신설
 -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
 -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가입 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
- '06.1.1 부 시행(5)
 -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
 - 중소기업자간 경쟁의무화 제도
 - 등급별경쟁제도 : 유사규모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
 - 계약이행능력심사 : 덩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가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
 - 공사용자재 직접(분리)구매 확대
- '07.1.1 부 시행(2)
 - 직접생산 확인제도
 - 공공구매 종합정보 DB 구축 및 정보제공 제도

